

電氣事業과

電氣料金

申基亨*

電氣事業도 하나의 “企業”으로서는一般企業과本質的으로 같다. 이事業도一般企業과 마찬가지로資本을調達하여設備를하고 사람을雇傭하고原料를使用하여製品을生產하고需要者에게販賣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事業은一般企業과比較하여相異한特性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事業의特性은各產業別의特性即紡織工業과化學工業等의特性과同格의 것이 아니고 한層基本의面이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주어진題目에關하여特性을中心으로하여一般的인解說을하여보기로하겠다. 주어진題目的電氣事業은一般供給事業으로解釋하고우리나라電氣事業法에서같이電氣事業으로規定하고있는電氣軌道事業과發送電事業은對象으로아니하기로한다.

1. 써어비스의 公益性과 獨占供給—— 公益企業

(1) 一般企業과의 基本의相異點

電氣會社가供給하는電氣써어비스가一般商品보다國民生活에必需性이높고公共福祉와關係가깊다고하여서이를公益써어비스라고하고電氣會社를公益企業이라고한다.

그러나單只公益써어비스를供給한다고하여서電氣事業이一般企業과다르다고할수는없다.公益써어비스를供給하는事業으로서는政府또는地方自治團體의道路,橋梁,港灣等土木事業도있고公益性的差異는있을런지모르나理髮業,大衆食堂業,旅館業等도들수있다.

이事業들과電氣事業과의相異點을 살펴보면土

木事業은財政의支出에依하여建設되고營業活動을하지않지만電氣事業은企業으로서組織되고營業活動을하는것을原則으로하는事業이고理髮業等一般써어비스業은企業이고따라서營業活動을하지만競爭을原則으로하는企業인데對하여電氣事業은地域의으로獨占供給하는企業인것이다.

電氣事業과一般企業과의基本의相異點은必需性높은公益써어비스를供給하되이를獨占供給한다는비서생기게된다.

이點은所謂公益企業에있어서는모두共通되는것이다.現在公益企業의概念은學問적으로明確히規定되어있지않지만大體로써어비스의“必需性”과“獨占供給”을具備條件으로하고“社會的認定”에依하여決定된다고보는것이妥當할것같다.이러한concept에서現在一般的으로公益企業이라고認定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 a. 公衆運輸事業
- b. 公衆通信事業
- c. 一般電氣供給事業
- d. 一般까스供給事業
- e. 一般水道供給事業

이事業들은모두所謂公益써어비스를供給하되地域의으로供給을獨占하고있는것이事實이며여기서公益企業의concept이생긴다고볼수있다.

(2) 獨占의理論

自由企業體制는企業活動에있어서의競爭原理에依하여原價切下와品質改善을促進함으로써消費者의利益을保護하는制度이며獨占은原則적으로排除하는것이다.

* 韓國電力株式會社·企劃部·料金役

a. 人爲的 獨占

그러나 自由企業體制 下에서도 政府의 財政收入 또는 社會的 消費規制를 目的으로 하여 政府가 專賣하거나 特定企業에 獨占을 許容하는 것도 있고 또는 特許權, 著作權 等을 保護하기 為하여 特定期間 獨占을 許容하는 例가 있다. 이러한 獨占은 人爲的 獨占이며 原來 自由企業의 營業活動에 맡겨진 性質의 것을 人爲的으로 獨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b. 自然的 獨占

그런데 人爲的 獨占 외에 自然的 獨占이 또 있다. 自然的 獨占에는 原材料의 制限에서 생기는 獨占과 製造法의 秘密에 基因하는 獨占과 企業固有의 資產의 性質에서 생기는 獨占이 있는데 이러한 獨占은 人間의 意思와 願望에 依하여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自然的으로 不可避하게 形成되는 것이다.

c. 公益企業의 獨占과 固定設備

公益企業의 獨占은 企業固有의 資產의 性質에서 不可避하게 形成되는 自然的 獨占인 것이다.

電氣事業이나 가스事業은 初創期에는 獨占이 아니었다. 美國이나 日本에서는 同一地域에 同種 씨어비스 供給을 2個 會社에 許可해준 일이 있었다. 그結果로 이 事業은 競爭體制로서는 經營이 繼續하여 圓滑히 되지 않고 오히려 社會의 으로 不利하게 된다는 것을 經驗으로써 認定하게 되었다.

電氣事業 等 所謂 公益事業의 經營上の 特徵은 씨어비스 供給設備의 建設에 要하는 投資의 比重이 极히 크다는 點이다. 이 事業은 一般 製造業과 같이 製造工場만 가지고는 營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電氣事業은 發電所와 모든 需用家の 使用場所를 直接連結하는 機械化된 設備를 가져야 하고 이 設備를 運轉하여 個個 需用家에게 씨어비스를 直接供給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揭示하는 表-1 및 表-2를 보면 他產業에 比하여 公益企業 特히 電氣事業의 設備投資의 比重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1) 固定資產 構成 比率表

(1963年 日本 大藏省 計)

電 力	92.5%
ガス	76.9%
運輸通信	65.5%
鐵 鋼	53.8%
化 學	53.5%
織 維	48.8%
	38.1%

電氣機器	82.9%
機 械	29.6%

(表-2) 年間收入에 對한 設備投資 比率表

(Russell E. Caywood著 Electric Utility Rate Economics p. 2)	
電 力	4.15倍
ガス	2.83倍
鐵 道	3.62倍
電 話	2.98倍
製造業	0.35倍 (美國 100大會社)

公益企業을 一般的으로 設備投資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따라서 이 事業은 總費用 中 固定費(資本費와 固定的 營業費)의 比重이 极히 크게 되며 原料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業이 2個 以上 同一 地域에서 競爭한다면 設備의 重複이 不可避하게 되고 所謂 二重投資가 생겨서 資本의 效率이 낮게 되고 反面 地域의 으로 限定된 需用家는 分割되어 固定費는 적은 供給量에 配分되게 된다.

이렇게 供給原價가 비싸게 되는데도 不拘하고 會社間에는 需用家 爭奪을 為한 料金引下競争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原來 公益 씨어비스는 質의 差異가 적은 關係上 需用家는 料金이 조금다라도 番供給者에게 移動하게 되기 때문에 더우기 競爭은 激化되고 結局은 한 쪽이 剷霸獨占하게 되는 것이며 繼續的인 競爭狀態의 維持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破滅的인 競爭의 結果로 한 會社가 獨占하게 된 然後에는 競爭에서 招來된 損害는 需用家에게 轉嫁되게 마련인 것이다.

公益事業의 獨占은 實際로 以上과 같은 競爭의 經驗을 거쳐서 事業固有의 資產의 性質上 獨占이 需用家에게 有利하고 不可避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2. 政府의 監督統制

電氣事業 等 公益企業에 對한 獨占許容에 따라 需用家の 利益 保護를 為하여 政府의 監督統制가 加하여지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政府는 會社에 對하여 供給義務를 지우고 工作物, 工事, 業務 및 財產 等에 關한 報告를 받고 檢查할 權限을 保有하여 事業의 休止와 廢止, 料金 其他 供給條件, 會計制度, 増資, 社債發行, 事業의 讓渡,

合併 等에 對한 監督統制를 加하는데 第一의 目的은 모든 需要者에게 良好한 씨어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適正한 料金을 實現維持하는데 있는 것이다.

(1) 씨어비스에 對한 監督統制

씨어비스에 對한 政府의 監督統制는 會社側에는 씨어비스供給義務로 되는데 이 内容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電氣씨어비스는 누구가 어디서 要求하면지 差別없이 普遍의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이 點은 一般競爭 企業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人種이나 社會의 地位의 差別없이 要求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供給하여야 한다는 것은勿論이고 供給區域內 어디에서나——山峯대기이 있는 한집에서 要求하는데 對하여도——供給할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限界費用이 一般料金에 依한收入을 超過한다면 特別料金 條件으로 供給하게 되는 것이다.

b. 電氣씨어비스는 어느 때에나 需用家가 須하는 때에 充分히 供給하여야 한다.

이義務는 電氣會社의 供給義務 中에서 가장 重要的部分이다. 電氣事業은 씨어비스를 언제든지充分히 需用家가 必要대로 利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씨어비스業으로서의義務를 違行하고 價値를 認定받게 되는 것이다.

이義務를 다하기 爲하여 電氣會社는 尖頂負荷에 맞추어 設備를 準備하여야 하고 需用增加를豫想하여 設備를 擴張할 責任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點은 一般企業에서는 全然 다르다. 商品의 需要가 增加하여 供給이 不足하게 될 경우에도 各個企業體의 設備規模擴張與否는 各者の 意思에 依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c. 良質의 電氣씨어비스를 供給하여야 한다.

이義務는 電氣會社의 競爭을 通한 質量改善의 刺激이 없기 때문에 特히 強調되는 것이다. 會社는 恒常 最新의 技術을 研究 習得하고 完全한 裝置를 하여 씨어비스를 供給하여야 한다.

(2) 料金에 對한 監督統制

獨占價格理論에서 말하는 供給量과 價格의 人爲的調節에 依한 所謂 最大利潤을 막기 爲하여 政府는 電氣事業 等 公益企業에 對하여 씨어비스面과 아울러 料金面에서도 監督統制를 加하게 되는 것이다.

政府의 料金統制의 目標는 獨占利潤의 防止와 씨어비스供給義務의 跡반침에 두개 된다. 電氣料金은 그 供給하는 씨어비스의 公益性에 비추어 되도록 할 것이 要請되지만 電氣會社에게 供給義務를 다할 수 없게 할 程度로 料金을 싸게 한다면 結果의으로 需用家의 利益이 保護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合理的料金 또는 適正料金이라는 用語가 나오고 그 必要性이 強調되게 되는 것이다.

料金策定의 關하여는 原則, 基準이 確立되고 要領, 方法도 定해져야만 適正料金이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政府가 料金을 統制할 경우에는 會社나 需用家에게 좋지 않은 結果를 가져오게 되기 쉽다.

(3) 適正料金의 原則

適正한 電氣料金이 한 最少限度의 運營經費와 公正한 投資報酬의 合計를 會社所要收入總額으로 하고 각個需用家에게 이를 公平하게 負擔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原價主義의 原則」 또는 「公平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 原則은 極히 常識의이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이 原則에 따라 適正料金을 實現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基準, 要領, 方法에는 어려운 問題點이 많아 있다.

最少限度의 運營經費는 誠實하고 能率의經營에서 所要되는 經費라고 할 수 있는데 經費實績에 依據하지 않고 客觀의 妥當性 있는 標準經費를 設定하여 이에 依據하는 것이理想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로는 거의 不可能하므로 實績를 基礎로 하여 特殊한 事由 있는 것에 對하여 增減하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一般的慣例로 되어 있다. 이것은 經費의 統制를 過度히 하면 營業干擾의弊端이 생기는 關係로 平素의 會計監督 等의 間接의手段으로 經費統制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會社所要收入總額 算定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것이 “公正한 投資報酬”이다. 投資報酬는 事業에 投入된 資產에 對한 代價이며 具體的으로는 他人資本에 對한 利子와 自己資本에 對한 配當所要額 및 獨立所要額의 合計를 말한다.

이 投資報酬의 最少限度는 電氣事業 等 公益企業이 供給義務를 다하기 爲하여 設備를 擴張하는데 所要되는 追加資本을 資本市場으로부터 誘引할 수 있는 程度로 되어야 한다는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資本의公正한代價가期待안되는企業에는資本을내거나빌려줄사람이없기때문이며새資本을調達못하는電氣會社는供給義務를다하지못하게되기때문이다.

運營經費와投資報酬가最少限으로는認定되기때문에競爭企業에비하여電氣會社의經營은安逸에흐르고能率向上의意慾이생기지않게되기쉽다.특히investment報酬를認定하는方法으로서實際대로借入別金利에依하여所要利子額을算定하고自己資本에對하여配當金과積立金을算定하는實算金額方法을取할경우에는金利切下,資金活用,資本構成의改善等에努力할意慾이생기지않게되고會社經營에能率向上을期待하기힘들게되는것이다.獨占을許容하는公益企業에對하여能率向上을刺戟하기爲하여先進國에서는投資報酬認定方式에 가장腐心하고여러가지變遷過程을거쳐서只今은所謂公正報酬原則을確立,實施하고있다.

이原則은써어비스供給을爲하여使用되는事業資產의“公正價值”에對하여“公正한報酬率”로investment報酬를算定하는것이다.따라서資產의評價와公正率의決定이問題로되는데이것은會社의周圍與件에따라決定될것이다.資產의評價method으로서物價變動이없는社會에서는建設原始價格을基準하는것이可할것이고物價騰貴가甚한社會에서는再生產價格을基準하는것이可할것이다.公正報酬率은國內外의資本市場의金利와會社自體의財政狀態의展望에依하여被動的立場에서判斷,決定하여야하는것이다.

investment報酬를一定한率에依하여算定한다는것은客觀的으로妥當한investment報酬를認定함으로써經營能率을向上시키고자하는것이므로經營의能率如何에따르는所謂利益의多寡를認定하는制度라고할수있다.能率向上으로써생긴超過利益은一部만을會社가차지하고一部는料金引下로써需用家에게還元하면需給兩者的利益으로볼수있는制度이다.

最少限度의運營經費와investment報酬가會社의所要收入이며供給原價인데이것을各個需用家에게負擔시키는데있어서는公平하게하여야한다.總原價가適正水準으로定해졌다하더라도各個需用家에게不公平하게負擔시키면需用家는亦是獨占企業의被害을입게되는것이다.

各需用家에게公平한負擔을시키기爲하여는各

需用家에對한供給原價에依한料金表를만들어差別없이適用하여야한다.一部需用家에게特惠를준다면會社는所要收入總額을確保하여야하기때문에餘他需用家에原價以上의負擔을시키게되므로公平한負擔을爲하는供給原價에忠實하여야만된다.公平의原則도原價主義에包含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原價主義는適正電氣料金의最大的支柱인것이다.

料金表作成에 있어서各個需用家별로한다는것은現實적으로不可能하므로全體需用家를몇가지範疇로區分하여種別로料金表를作成하여適用하게된다.

3. 技術的特性

(1)需給即時性·貯藏不能性·負荷率

電氣서비스는需用家가顧하는때에顧하는量이供給되어야하는데貯藏이不可能하기때문에需用과生產및供給이同時에이루어진다는特性을 가지고있다.

이點은一般製造業과는全然다르고公益企業에서는大體로共通된다.純粹써어비스인通信·運輸써어비스와半有體物인電氣써어비스는貯藏이不可能하므로需給이完全히即時의이지만有體物인까스와水道는貯藏이 어느程度可能하므로需給即時性은相當히緩和된다.

電氣써어비스의需給即時性으로因하여電氣會社는年間尖頭負荷를供給할수있는設備容量을準備하여야하게되고反面에設備容量의相當部分은稼動치않는狀態가생기게된다.

電氣會社經營에있어서는固定的인經費(資本費와固定的營業費)의比重이極히큰데이固定經費는尖頭負荷를供給하기爲한設備에依하여定해진다.따라서設備의稼動치않는狀態를적게하면써어비스單位當供給原價는내려가며내려가는比率이一般製造業보다훨씬크게된다.電氣事業을특히原價遞減事業이라고하는것은이때문이며負荷率이電氣會社經營에서특히料金表作成에있어重要視되는것도이때문이다.

負荷率은一定期間의平均負荷에對한尖頭負荷의比率인데設備의利用度를表示하는것이다.

設備의利用度는事業規模와도關係가깊으며事業規模가클수록豫備設備을相對的으로적게가져도되므로總設備의利用度는높아지는것이다.

(2) 不等率

電氣서비스는 需給即時性 때문에 萬若에 모든需用家가 各己 最大電力을 同時に 使用한다면 電氣會社는 個個需用家의 最大電力의 合計에 該當하는設備容量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實際는需用家의 씨어비스使用은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同時に 모든需用家가 最大電力を 使用하는 일은 없는 것이常例이며 不等率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不等率은 個個需用家의 最大電力의 合計에 對한同時に 일어나는 最大電力의 比率을 말하는 것이며 個個需用家의 最大電力의 時間的分散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不等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電氣會社는 相對으로 적은 設備容量으로써 供給이 可能하게 되고 固定經費는 많은需用에 分散되어 單位當原價가 減滅되는 것이다.

4. 供給原價와 料金表

(1) 供給原價構成의 特性

電氣서비스 供給原價에는 一般企業의 所謂 利益도 投資報酬라 하여 原價에 包含시키는데 이는 公益企業에서는 料金을 人爲의으로 策定 適用하기 때문이며 一般企業에서 볼 수 있는 特異한 點이다.

電氣서비스 供給原價構成上의 特性은 所謂 設備投資事業에서 緣由되는 固定費에 있다. 表-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固定의 資本費의 比重이 50%以上이며 運轉維持費中에서도 燃料費以外는 大部分이 固定의 經費이며 이 中의一部가 所謂 可變費라 해도 固定費는 總 供給原價의 約 80%가 된다. 이 固定費는 設備에 關聯되는 것이며 電力量 供給의 多寡에 左右되지 않는다. 公益企業을 設備運轉事業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 때문에이라 하겠다.

表-3은 電氣事業의 正常의 原價構成 狀態를 보는 意味에서 美國의 것을 指하였다.

(表-3) 美國私有電力會社 原價構成表

(1957年 E E I統計表)

項 目	金 額(百萬弗)	百分率
事業收入	8,044	100.0
運轉維持費		
燃料費	1,385	17.2
其 他	2,254	28.0
資 本 費		
稅 金	1,857	23.0
減價償却費	833	10.4

支拂利子	511	6.4
利 益	1,204	15.0

(2) 原價의 3要素

電氣서비스 供給原價는 여러 角度에서 分類할 수 있으나 料金策定 目的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分類한다.

a. 需用家費

이 經費는 電氣會社가 需用家와 去來關係를 가지게 되면 電力量의 使用와 關係없이 亦需用家의 負荷의 크기와 關係없이 所要된다고 생각되는 經費를 말한다. 會社는 個別需用家에게 씨어비스를 供給하기 为하여 配電線, 電柱, 柱上變壓器, 引込線, 計量器 等의 設備를 가져야 하고 檢針, 料金調定 및 收金을 하여야 한다. 實際의 경우 이 配電設備는需用家의 負荷의 크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이러한 設備를 最少 規模로 할 경우를 假想하여 그런 경우의 配電設備의 資本費와 運轉維持費와 檢針, 調定, 收金費를 單純히 需用家라는 關係에서 생기는 經費로 보아 이를 需用家費라고 한다.

이 經費는 需用家當 大體로 同額이며 需用家數에 따라 變動한다.

이 經費는 각 需用家에게 반드시 負擔시켜야 할最少限度額으로 된다.

b. 需用電力費

電氣會社는 尖頭負荷에 對應하여 發電設備, 送變電設備, 配電設備를 運用하여야 하는데 이 設備容量에 關聯되는 資本費와 運轉維持費를 (配電設備에 對하여는需用家費 要素分除外) 需用電力費라고 한다.

設備容量은 需用家의 負荷의 增大에 따라 增加되며 需用電力費는 設備容量의 限界內에서 固定되고 電力量 供給의 增減에 따라 增減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設備容量 限界內에서는 電力量 供給이 增加할 경우 電力量 單位當原價는 低下하게 되는데 總供給原價 中에서 需用電力費比重이 가장 큰데다가 需用家費도 電力量 供給에 左右되지 않는 固定의 經費이므로 電力量 單位當原價低下는 激甚해지게 된다.

c. 燃料費

이 經費는 電力量 供給에 直接 比例하여 增減한다.

參考로 美國의 電力調查團 料金技術者가 1964년 度 韓電의 總 供給原價를 3要素別로 分類한 比重值를 보면 表-4와 같다 (收入과 經費를 調査當時 現

實的으로 調整한 것임).

(表-4) 3要素別 原價比重

要素別	金額(百萬원)	百分率
需用家費	1,666	17.4
需用電力費	5,431	56.7
燃料費	2,474	25.9
計	9,571	100.0

(3) 料金表

a. 種別料金表

電氣料金表는 各 需用家에게 原價를 公平하게 負擔하도록 定하여야 하는데 需用家個別로 定한다는 것은 現實의으로 不可能하므로 모든 需用家를 써어 비스使用狀態에 따라 몇 가지 種別로 區分하여 種別料金表를 만들어 適用하게 된다.

써어비스 單位當 原價는 種別로 다르지만 同一 種別에서도 需用家別로 다르며 同一 需用家도 每月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各 需用家의 써어비스 單位當 原價는 各 需用家의 써어비스使用狀態에 依한 前記 原價 3要素의 配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結局 電氣料金表는 各需用家の 써어비스 使用狀態에 따른 供給原價를 正當히反映하도록 하는 것이며 種別 料金表는 種別에 따라 表示形態를 달리하는데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萬若에 種別을 달리하는 2個需用家の 負荷의 크기와 使用量이 같을 경우에는 實際 供給原價는 같으므로 2個의 種別 料金表를 각각 適用하여도 各需用家の 負擔額은 같이 되도록 料金表가 만들어져야 한다.

種別 料金表는 各種別의 大多數需用家の 使用狀態에 따른 原價反映에 適合한 表示形態를 取하는 것이므로 種別의 類型에서例外의 使用狀態의 需用家の 原價反映에는 不適當하게 되는 缺陷이 생기게 되기 쉽다. 또한 需用家를 種別로 區分하는 關係上 中間의in 狀態의 需用家가 생기게 되기 쉽다. 結局 料金表의 完全無缺치 못한 點을 補充하기 為하여는 이러한 需用家들에게 適用할 料金表의 選擇權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種別 料金表는 各種需用家の 供給原價에 忠實하기 為한 技術의 方法이며 獨占企業의 收奪의in 差別價格이 아닌 것이다. 深夜料金 또는 特殊需用家の 個別 特約料金은 差別待遇의 印象이 깊으나 이러한 料金도 限界費用을 基準하여 定하는 것이며 이러한 料金을 實施함으로써 設備利用度를 높이고 餘他需用家の 平均原價를 低減시키는 效果가 생기게

되며 此에 是認되는 것이며 特惠의in 差別待遇는 아닌 것이다. 特定需用家 또는 特定產業에게 特惠의in 差別待遇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餘他需用家의 負擔을 增加시키는 것은 公益企業料金의 原則에 벗어나는 일이다.

b. 料金形態

一般商品 價格은 總 原價에 依한 單一 價格으로 되지만 電氣料金은 獨特한 原價 3要素의 構成 때문에 單一 料金(種別)으로 할 수 없다.

理論의으로는 原價 3要素에 따라 需用家料金, 需用電力料金, 電力量料金의 3部制로 하는 것이 가장妥當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種別에 3部制 料金을 適用한다는 것은 實際의이 뜻된다. 需用電力料金을 適用하기 為하여는 負荷의 크기와 力率을 測定 또는 算定하여야 하는데 小需用家를 對象으로 이려한 測定, 算定을 한다는 것은 써어비스量에 比하여 經費가 너무 비싸게 耗여서 할 일이 뜻되고 大需用家에게 얼마 안되는 需用家料金을 分離 適用한다는 것도 無意味한 일인 것이다.

結局 實際의으로는 料金表 形態로서 小需用家에게 適用할 料金表에는 需用家費를 基準한 最低料金과 電力量料金으로 하고 大需用家에게 適用할 料金表에는 需用電力料金과 電力量料金으로 하는 것이 가장 適合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경우 小需用家 料金表의 電力量料金에는 電力量 使用範圍에 따라 需用電力費를 包含시키고 大需用家의 需用電力料金에는 需用家費와 需用電力費의一部를 包含시키고 需用電力費의 大部分은 電力量料金에 包含시킨다.

需用電力費는 不等率의 大小에 따라 增減하는 것이며 不等率은 各需用家の 負荷率에 따라 變動하는 것이므로 負荷率이 낮을 때에는 需用電力費를 조금만 負擔케 하고 漸次 負荷率이 높아짐에 따라 需用電力費 負擔을 增加시켜야 한다. 이러한 原價變動을 反映하는 料金形態로서 從量塊量料金制 또는 負荷率塊量料金制를 採擇하게 되는 것이다.

街路燈 또는 極小需用家에 對하여는 써어비스使用이 固定의으로 原價 3要素의 配合에서 오는 總 原價가 固定되고 따라서 W當 또는 Kw當의 單一 料金을 適用할 수 있으나 이것은 電氣料金에서는例外의in 것이다. 定額制는 計量器를 必要로 하지 않고 따라서 檢針을 안하여도 되고 料金調定이 簡單하다는 長點도 있으나 需用家 間에 써어비스使用量

에 差異가 있을 경우에 不公平하게 되고 또한 씨어비스濫用을 助長하는 短點이 있다. 電氣事業料金에서 定額制는 街路燈에만 適合하고 其他 需用에는 適合치 않은 것이다.

電氣料金에서 單位當 料金을 使用量 또는 使用時間이 많아짐에 따라 塊量制로 하여 짜게 하는 것은 原價를 正當히 反映하는 方法인 同時に 需用促進의 效果를 兼하여 가지게 된다. 電氣써어비스 供給原價에는 固定費의 比重이 極히 크므로 需用促進은 重要한 일이 된다. 固定費를 더욱 많은 販賣量에 分散하기 為하여는 販賣量增加를 圖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需用을 促進하는 料金이라 할지라도 尖頭負荷時의 需用을 增加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尖頭負荷時의 需用增加에 對應하기 為하여는 新規로 發電所를 建設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發電所는 避尖頭負荷時에는 不動設備로 되기 때문이다.

反對로 避尖頭負荷時에 생기는 需用에 對하여는 燃料費 단을 카바하면 되기 때문에 쌈 料金을 適用할 수 있으며 販賣量을 增加하고 尖頭負荷를 높이지 않기 為하여 이러한 料金制度가 必要하게 된다.

電氣料金 形態는 計測器 發展과 더불어 發展하여 왔으며 近來에는 負荷曲線의 改善機能을 發揮하는 方向으로 變遷되는 傾向이 있다. 事業初創期 計測器가 缺을 때는 房의 面積 또는 電球의 容量에 依한 定額制料金, 다음에는 웨트아워·미터에 依한 直線從量料金制와 塊量制, 다음에는 칼로위트·디엔드·미터를併用한 需用料金과 電力量料金의 2部制와 각 料金에 對한 塊量制로 發展하여 왔는데 佛蘭西에서 高壓 大需用家에 適用하고 있는 尖頭時間料金과 避尖頭時間料金制는 原價反映을 더욱 精密하게 함과 同時に 負荷曲線의 改善을 期하는 것으로 씨設備의 積動率을 높이고 會社經營을 더욱合理화하는 料金制度라고 할 수 있다.

5.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과 料金

(1) 電氣事業에 對한 政策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은 8·15解放 以後 20年 가까이를 供給力不足과 非正常的 料金의 持續으로 供給義務를 다하지 못하고 지내 왔다.

그 根本原因是 元來 發電設備의 大部分이 北韓에 偏在하여 있었던 事實과 激甚한 인프레의 連續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또 다른 原因으로서 電氣事業에 對한 政府 政策의 不透明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惡性 인프레가 進行하는 環境 속에서는 料金의 正常化 또는 經營의 健全化를 實現할 수 없었을 것이 었지만 적어도 1957~8年 以後 인프레가 緩慢해지고 特히 1958年 財產再評價法이 公布되어 모든 企業經營의 健全화와 發展이 促求되던 段階에 이르러서는 電氣料金의 正常化, 電氣事業의 健全화와 發展을 實現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緊急히 實現하여야만 할 時期였던 것이다.

이러한 環境과 時期에서도 政府는 極度로 料金正常化를 嫌惡, 忌避하고 1961年 4月까지 非正常的인 料金을 持續하였다. 한便 財政投融資 等으로 電源開發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需用家는 쌈 料金으로 不良하고 不充分한 씨어비스를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當時의 이러한 電氣事業에 對한 不透明한 政策은 電氣事業이 公益企業이며 政府所有企業이라 하여 出血料金 經營을 繼續하는 것이 國民을 為하는 것으로 莫然히 생각한데 起因하였는지도 모르겠으나, 結局은 電氣事業의 基本 性格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였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電氣事業은 元來 基本 性格上 國有이건 民有이건 間에 企業에이스로 運營되어야 하는 事業이며 收支를 超越한 財政事業方式의 運營은 一時的 또는 部分的으로는 可能할지 모르나 長期的 또는 全面的으로는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電氣事業은 設備事業이며 또한 成長事業인 關係로 年年 巨額의 資本을 投入하여야만 하는데 그 規模는 財政支出로 充當할 수 없을 程度의 것인 반面에 이 事業은 씨어비스를 需用家에게 適當한 料金으로 팔아서 營業活動을 할 수 있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参考로 1963年度 產銀「礦工業센서스」에 나타난 年間 固定資產 投資額을 보면 電氣事業(電車事業除外)이 7,754百萬원으로서 鐵工業 全體(從業員 5人以上: 鐵道廳의 工作廠, 專賣廳의 煙草工場 包含)의 16,892百萬원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現在의 電源開發計劃의 成功적인 違行을 為하여는 電源開發資金은 앞으로 10年間은 年間 約 100億원이 所要되며 그 以後는 漸次 더 늘어 갈 것이豫想된다.

이러한 巨額의 資本의 大部分은 主로 外國 資本市場에서 끌어 와야만 하는 形便인데 그러기 為하여는 電氣會社가 健全한 經營을 하여 資本을 끌어

운만한 收益力を 가지게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方向으로 政策이 轉換된 것은 1961年 4月의 電氣料金 改正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最近에 이르러서는 所謂「公共料金의 現實化」政策의闡明으로 더욱 明確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2) 電氣料金의 原價構成과 料金水準

우리 나라의 電氣料金은 8·15解放以後 14次나 改正되었는데 1957年 1月의 12次 改正까지의 料金은 物價上昇에 뒤따라 燃料費, 人件費, 支拂利子等 最少限의 現金支出만을 引上調整한데 不過하였다. 修繕費도 恒常 아주 不足하게 計上하고 減價償却費는 馬山, 三陟, 唐人里의 美國援助에 依한 10萬Kw火力이 完成된 後인 12次 改正時에 10萬Kw火力設備에 對한 것이 計上되었을 뿐이며 投資報酬에 對하여는 考慮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1957年 1月 料金改正 直後부터 料金의 正常化가 論議되기 始作하였는데 이것은 當時에 計劃, 推進되던 忠州水力建設을 為한 借款獲得의前提條件으로 不可避하였다. 그려한 料金正常화가 1961年 4月에 實現되었고 1964年 9月에 다시 이 것이 改正되었다.

1961年 4月 以後의 料金에는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를 正常의 計上하느라고 한 것이지만 料金策定時 設備資產의 帳簿價額을 基準으로 算定한 關係로 策定始初부터 充分한 正常화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며 料金策定 後의 物價上昇에 따라 더욱 不充分한 것이 되고 말았다.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의 算定에 있어서 料金策定當時 帳簿設備價額을 基準하였다는 것은 實質적으로는 1961年 4月 料金은 1958年の 再評價資產價格을, 1964年 9月 料金은 1962年 6月末의 再評價資產價格을 基準한 것으로 된다. 또한 投資報酬率은 1961年 4月 料金에서는 10%, 1964年 9月 料金에서는 7.1%로 하였던 것이다.

要컨대 1961年 4月 以後 料金의 正常化를 指向하여 왔으나 從前의 料金水準을 無視하고 一時に 急激한 引上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64年 9月 料金의 投資報酬率도 7.1%로 된 것이며 現 料金은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 算定 基準이 現實價值에서 不足하고 또한 報酬率에 있어서도 現實의이 못되어 正常化面에서 볼 때 不充分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電氣料金을 引上할 때 引上率을 物價上昇率과 比

較하여 引上率의 過不足을 判断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電氣料金은 過去에 너무나 非正常的이었고 至今도 完全히 正常化가 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基準으로 하는 比較는 正當한 判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料金水準을 보는데 있어서는 먼저 原價構成內容의 正常與否를 알아보는 것이 옳은 것인데 1957年以後 3次에 걸친 料金策定 當時의 總原價構成內容을 要約해 보면 表-5와 같다(資本費比重을 表-3과 比較 要望).

(表-5) 韓國 電氣料金 原價構成表

<1957年 1月 料金>

項 目	金額(百萬원)	百分率
運轉維持費		
燃 料 費	629	31.6
其 他	1,149	57.8
資 本 費		
稅 金		
減價償却費	70	3.5
投資報酬	142	7.1
計	1,990	100.0

<1961年 4月 料金>

項 目	金額(百萬원)	百分率
運轉維持費		
燃 料 費	1,086	26.4
其 他	1,855	45.1
資 本 費		
稅 金	24	0.6
減價償却費	562	13.6
投資報酬	590	14.3
計	4,117	100.0

<1964年 9月 料金>

項 目	金額(百萬원)	百分率
運轉維持費		
燃 料 費	2,883	23.7
其 他	3,219	26.2
資 本 費		
稅 金	513	4.2
減價償却費	2,050	16.9
投資報酬	3,487	28.7
計	12,152	100.0

電氣料金 水準에 對한 批判에 있어서는 原價構成內容의 檢討가 本質의 것이며 單純한 物價上昇率

(新) (春) (隨) (想)

三和貿易株式會社
社長 吳東善

지난 해는 韓日國交 正常化의 問題로 因하여 國內 政界는 勿論 一般社會와 學園에 까지 큰 波動이 일어나고 數10年來의 旱害와 洪水의 天災가 겹쳐서 큰 試鍊을 겪은 1년이었으며 61年 만에 韓日 兩國이 正式 修交를 맺은 歷史的인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 照용히 眼은 새해는 1次 5個年計劃의 때를 짓고 2次 5個年計劃을 為한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飛躍의 해로서 우리 企業人은 勿論 온 國民이 다같이 새로운 覺悟 아래 올해도 亦是「일하는 해」로서 맞이해야 될 줄 안다.

옛날 春園은 「10年 한길」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사람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는데 이것 저것 여러 方面에 머리를 쓰면 精力과 時間이 分散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되어自己天分에 맞는 한 가지 일을 摲하여 그 일을 10년만 精進하면 能히 그 일에 通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主張이었다. 10년을 하루 같이 精進하고 忍耐로써 努力하면 무엇인가 봤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大成한 政治家, 學者, 企業家들의過去를 보면 그大概가 荆棘의 길을 오랜 時日을 한결같이 精進한 努力의 結實로 알고 있다. 或者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運이 좋아서 크게 成功하였지」云云하는데 運이란 研究와 勤勉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自身이 電氣工業 한 가지 일에만 於焉 27년이란 짧지 않은 歲月을 從

事하였다 해서가 아니라 모풀치기 企業家는 自身이 摲한 事業을 営爲함에 있어 어여한 儂倖數나 恵澤을 바라는 마음은 秋毫라도 가져서는 안되어研究와 忍耐와 努力으로 10年을 하루 같이 꾸준히 精進한다면 틀림 없이 成功할 것으로 안다. 이것은 企業家에게만 該當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凡百事에도 같은 理致가 通할 것이다.

오늘날 科學文明의 發達이 極에 達하여 멀지 않은 將來에 月世界旅行이 可能하게끔 되었음에想到할 때 이 또한 이 事業에 從事한 數 많은 科學者들이 「10年 한길」로 精進한 所產일 것이다. 모든 文明이 날로 發達하여 각은 각各 그 分野에 있어서 오랜 歲月을 하루 같이 研究하고 努力하여 荆棘의 길을 꾸준히 精進하고 있는 專門家들이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올해는 丙午年으로서 말의 해이다. 옛부터 傳해오는 말에 關한 傳說이 많는데 龍馬니 名馬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千里馬니 駿馬니 하는 말도 있다. 하루에 千里길을 能히 달린다고 하니 말은 飛躍, 跳躍, 또는 一路邁進 等의 뜻과도 通한다고 생각된다.

올해는 말의 해이면서 明年부터 始作될 2次 5個年計劃事業 推進을 為한 跳躍의 해이기도 하니 政府에서 내세운 經濟政策과 말의 해는 一脈相通하는 것 같다. 1次와 2次 5個年計劃事業 目的達成을 為하여 「10年 한길」精神으로 말과 같이 꾸준히 달리고 또 달려서 自立經濟體制를 確立함으로써 先進諸國과 어깨를 같이 하여 躍進韓國의 모습을 海外에 誇示하는 날이 하루速히 오도록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電氣料金이 鐵工業 生產品 原價 中에 占하는 比重은 2~3%, 生計費 中의 比重은 2% 未滿에 不過하지만 至今까지는 電氣料金을 長期間 据置하였다가 一時에 大幅 引上한 關係로 需用家에게 打擊을 주고 會社도 困難을 當하여 있는데 이를 避하기 為하여는 短期間에 小幅 引上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電氣料金은 長期安定이 要望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物價上昇이 基한 環境에서는 電氣料金을 長期間 据置하여 들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또는 外國 料金水準과의 比較로써 正當性 與否를 論하는 것은 論理的 根據가 稀薄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電氣料金과 物價는 相互 循環關係에 있으므로 物價가 上昇하면 電氣料金도 引上 안할 수 없으며 現行 料金은 資本費가 實現化되지 않은 資產額을 基準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正常化하려면 物價上昇率 以上的 引上을 要할 것은 不可避한 일이라 하겠다.